

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」

1. 개정이유

상위법(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, 행정안전부)의 법령명 변경에 따른 우리 부 소관 법령명 및 법령 내용 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명 변경 :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나. 법령 내 ‘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’으로 명시된 부분을 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첨부 :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령명 중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조 중 “비상대비자원관리법”을 “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비상대비자원관리법”을 “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”을 “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으로 한다.

부칙 제5조 중 “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”을 “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”을 “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”을 “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”을 “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”을 “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”을 “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중 “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”을 “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”을 “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부 칙

1. 이 시행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령명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	법령명 보건복지부 소관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시행규칙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관리대상업체의 범위) 「비상대비자원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보건복지부장관 관리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관리대상업체의 범위) 「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보건복지부장관 관리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제3조(권한의 위임) 보건복지부장관은 「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위임한다.	제3조(권한의 위임) 보건복지부장관은 「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<u>시행령</u> 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위임한다.
부 칙 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⑩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	부 칙 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⑩ 보건복지부 소관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[별지 제1호서식] 제목 : 자원조사표 제출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원조사표를 제출합니다.	[별지 제1호서식] 제목 : 자원조사표 제출 「보건복지부 소관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원조사표를 제출합니다.

현행	개정안
[별지 제2호서식] 자원조사집계표 제출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원조사집계표를 제출합니다.	[별지 제2호서식] 자원조사집계표 제출 「보건복지부 소관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시행규칙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원조사집계표를 제출합니다.
[별지 제3호서식] 물자생산시설 (보강·확장) 명령서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산시설을 (보강·확장)할 것을 명령합니다.	[별지 제3호서식] 물자생산시설 (보강·확장) 명령서 「보건복지부 소관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산시설을 (보강·확장)할 것을 명령합니다.
[별지 제4호서식] 기술개발 (시제품 제작) 명령서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개발(시제품 제작)을 명합니다.	[별지 제4호서식] 기술개발 (시제품 제작) 명령서 「보건복지부 소관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개발(시제품 제작)을 명합니다.
[별지 제5호서식] 비축 명령서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자비축을 명합니다.	[별지 제5호서식] 비축 명령서 「보건복지부 소관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자비축을 명합니다.
[별지 제6호서식] 비축물자의 비축장소 변경 승인신청서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[별지 제6호서식] 비축물자의 비축장소 변경 승인신청서 「보건복지부 소관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시행규칙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[별지 제7호서식] 비축물자 실태보고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축물자의 실태를 보고합니다.	[별지 제7호서식] 비축물자 실태보고 「보건복지부 소관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축물자의 실태를 보고합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	
연 락 처	(044) 202 - 2394